



해양수산부, 선박밸러스트수 처리설비기준 제정 기준안 규제심사위원회 심의거쳐 9월부터 시행

선박밸러스트수(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해 배안에 실는 물) 처리설비의 국제적 선점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밸러스트수 처리설비 형식승인 기준(안)’을 마련해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기준안의 주요내용은 △기계적기준, 작동기준 등 제품시험 기준 △신청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등 형식승인 절차 △시험기관의 자격기준 등 형식승인 기관 △신청서 및 증서양식 등이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들의 선박밸러스트수 설비 개발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선박밸러스트수 설비는 선박밸러스트수에 의해 수중생물이 다른 나라로 이동해 해양생태계를 파괴시키거나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안에서 전기, 약품 등을 이용해 밸러스트수내의 수중생물을 죽이는 장치다.

이 설비는 국제해사기구(IMO)가 관련협약에 따라 국제항해선박에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아직 까지 완제품이 개발되지 않아 각국이 경쟁적으로 개발 중에 있다.

7월 현재 우리나라 2건, 독일 4건, 일본 4건, 영국 1건, 스웨덴 1건, 노르웨이 1건 등 총 14건이 개발 중에 있다.

이 설비는 협약이 발효되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전세계 선박 3만여 척에 설치될 예정이며, 세계시장규모는 연간 약 5천억 내지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테크로스가 전기분해를 이용해 일렉트로크린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주)엔케이가 오존을 이용해 NKO3를 개발해 제품개발을 위한 시험을 준비중에 있다.

IMO의 선박의 밸러스트수와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 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for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은 선박밸러스트수를 통해 외래해양생물체가 유입되어 연안국의 해양생태계를 파괴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밸러스트수 관리하기 위한 협약으로서 1970년대부터 호주, 미국 등이 문제를 제기하여 1990년대부터 국제협약 마련을 위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고, IMO가 2004년 2월13일 동 협약을 채택했다.

이협약은 30개국이상 가입 및 선복량의 35%이상시 발효되는데, 오는 2009년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6년 6월 현재 가입국은 몰디브, 나이지리아, 세인트키트앤네이비스, 스페인, 시리아, 투발루 등 6개국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신조선박(2009년 이후 건조선박)은 밸러스트수 처리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해양생물체 및 병원균을 전기, 약품 등을 이용해 살생·살균후 배출토록 하고 있다.

또 현존 선박(2009년 전 건조선박)은 깨끗한海水를 교환하여 입항할 수 있으나 2017부터는 의무적으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교환시에는 육지로부터 50마일, 수심 200미터이상 해역에서 교환해야 한다.